평창700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8

제안연월일 : 2026. .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이유

○ 평창700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위탁개요

○ 위탁시설 : 평창700자연휴양림
○ 위 탁 자 : 평창군
○ 수 탁 자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위탁기간 : 2027. 1. ~ 2031. 12. 31.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사업)
○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시설 현황

○ 시 설 명 : 평창700자연휴양림

○ 위　　치 : 평창읍 고길천1길 396(여만리 산46번지)

○ 건축물 세부시설

1) 산림문화센터(연면적 652.4㎡ / 1동)

구 분	세 부 시 설	연면적
지하 1층 (359.27㎡)	사무실, 당직실, 기계실, 전산문서실, 세미나실, 탕비실, 세탁실, 화장실 등	359.27㎡
지상 1층 (293.13㎡)	카페, 소회의실 등	293.13㎡

2) 숲속의 집(연면적 750.1㎡ / 16동)

구 분	세 부 시 설	연면적	비고
구름채	거실 겸 주방, 화장실 등	48.87㎡	지상1층/3동
하늘채	거실 겸 주방, 방1, 화장실 등	55.08㎡	지상1층/3동
솔채	거실 겸 주방, 방1, 화장실	40.5㎡	지상1층/5동
별채	거실 겸 주방, 방1,	47.15㎡	지상2층/5동

○ 평창700자연휴양림 토지 : 15,415㎡

구 분	세 부 시 설	면적	비고
토지 (15,415㎡)	주차장 및 진출입로	7,052㎡	83면
	풍욕장	4,835㎡	
	전망경관쉼터	3,289㎡	
	오수처리시설	239㎡	1개소

□ 소요운영예산

○ 평창700자연휴양림 연간 운영예산

- 평창700자연휴양림(숙박시설) 연간 운영예산

(단위: 원)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운영원가	인 건 비 (A)		234,322,236	62.46%	
	경비	인적보험료	22,871,496		
		시설운영비	68,760,081		전기사용료, 인터넷사용료 등
		차량유지비	5,050,000		자동차세, 유류비 등
		물품구입비	19,667,859		시설관리물품 구입비
		지급수수료	11,780,000		물탱크청소수수료, 안전관리대행용역비 등
		기타비용	12,699,952		카드결제서비스수수료
		소 계 (B)	140,829,388	37.54%	
	순 원 가 (C)		375,151,624	100%	A + B
	일 반 관 리 비 (D)		-	-	공단등 지방공기업 미해당
	운 영 원 가 (C+D)		**375,100,000**	**100%**	**만단위 이하 절사**

※ 운영인력 5명(일반직 4명, 기간제(청소관리지원) 1명)
※ 2025 평창700자연휴양림 운영계획 수립용역에 의해 산출

- 평창700자연휴양림(카페) 연간 운영예산

(단위: 원)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운영원가	인 건 비 (A)		73,045,176	66.74%	
	경비	인적보험료	7,129,716		
		전력비	2,551,049		기업경영분석의 경비율 준용
		가스스도비	5,089,896		
		세금과공과	1,819,599		
		보험료	955,626		
		수선비	1,526,968		
		재료비	17,327,752		
		소 계 (B)	36,400,606	33.26%	
	순 원 가 (C)		109,445,782	100%	A + B
	일 반 관 리 비 (D)		-	-	공단등 지방공기업 미해당
	운 영 원 가 (C+D)		**109,400,000**	**100%**	**만단위 이하 절사**

※ 운영인력 2명(일반직 1명, 기간제 1명)
※ 2025 평창700자연휴양림 운영계획 수립용역에 의해 산출

□ 위탁 타당성 검토

○ 평창700자연휴양림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제1항제9호에 따른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에 해당되어 지방공단에서 적용 가능한 사업임.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2024.12.1.)」에 의거 시장성 테스트 및 인력과 조직의 적정성(정원이 4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검토가 필요

⇒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 중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해당되어 적정사업으로 검토됨

※ 공공시설물 해당여부에 대해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평창700자연휴양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로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에 따른 공공용재산에 해당함

□ 기대효과

○ 공단 위탁 관리운영 시 기 위탁운영 중인 평창자연휴양림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공단의 전문적 관리운영을 통해, 기존 위탁운영시설과 연계한 평창700자연휴양림의 활성화 기대됨.

→ 평창 치유의 숲,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에코랜드 등 주변 위탁운영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가능할것으로 기대됨.

6. 향후계획

○ 위·수탁 계약 체결: 2026. 12.

○ 시설물 위탁 관리운영: 2027. 1. ~ 2031. 12. (5년)

7. 참고사항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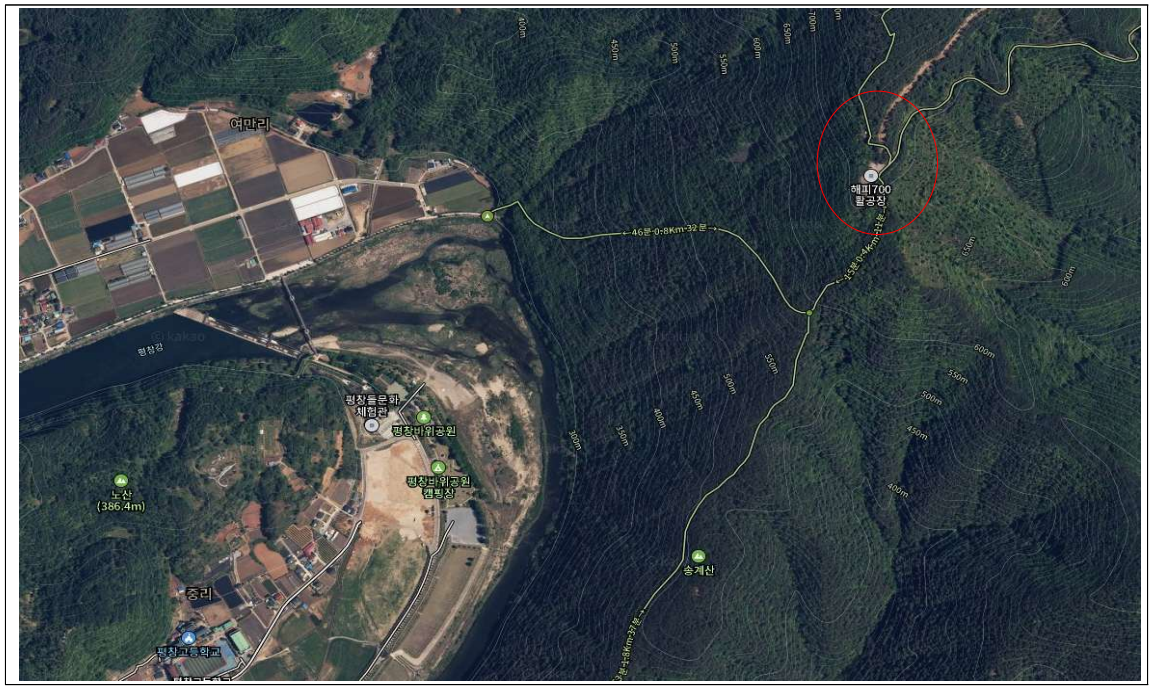

○ 현장사진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은 사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 설립기준」(행정안전부, 2024. 12. 1.)

[제2장] 지방공기업의 설립기준

Ⅱ. 설립단계별 세부 검토기준

7. 신규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

○ 총사업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500억원 미만, 시군구가 설립한 공사가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에 따라 신규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방공기업법」 71조와 제76조에 따른 공사 또는 **공단의 대행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치 않아도 되나, 시장성테스트**[별첨3-1], 인력과 조직의 적정성(정원이 4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검토 필요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별첨 3-1 】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

1 체크리스트

검토 항목	해당 여부
아래의 기준 중 1개 이상 만족 시 적정사업에 해당	
① 다른 법령에 의해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 · 운영	✓
③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주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에서 민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업	
④ 민간에 맡길 경우 난개발, 독과점, 사행심 조장, 환경 훼손, 안전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⑤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⑥ 지역 내 특수자원,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는 공사· 공단의 경우 그 목적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	
⑦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 및 주민의 공적 수요가 많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⑧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기피시설 관련 갈등 해소 또는 보상 차원의 사업	
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사업 중 초기 사업	
⑩ ① ~ ⑨ 사업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수반되는 사업	

2 세부 판단기준 및 예시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 공공시설물 해당여부는 관계법령 상 공공시설물로 인정되는 시설인지 여부와 공적 수요를 기준으로 판단

  ※ (예시) 기반시설·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공간(건축기본법) 및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운영

- 공공시설물 내의 일부사업(부대시설)을 별도사업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인정

  ※ (예시) 도시공원 내 일부 시설이 유기기구인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 공공청사 · 문화시설**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 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